

서울특별시-의정부시-노원구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추진 동의안  
검 토 보 고

의안 번호	1457
----------	------

2020. 4. 24.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1. 제안경위

- 2020. 4. 3. 서울특별시상 제출 (2020. 4. 8. 회부)

## 2.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와 의정부시, 노원구가 서울 동북권과 경기 북부권의 ‘동반 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기관 간 업무협조가 필요한 ‘도봉운전 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및 ‘장암동 수락리버시티1,2단지 노원구로 의 행정구역 변경’에 대하여 상호 협력하고자 협약을 체결함
- 본 협약은 행정구역 변경 및 면허시험장 이전사업에 따라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 대상지역인 의정부시에 상생발전 지원 방안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시의 예산편성 등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 협의 당사자인 의정부시의 조속한 협약 체결 요청과 이전 예정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 시한이 연말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에 해당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55조의3의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협약 전 보고 및 협약서에 효력발생 시기 조건을 붙여 협약을 선행하였으며,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의 성공적인 실행을 위해 해당 협약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협약 개요

- 목 적: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 및  
상생협력 지원
- 개요
  - 1) 도봉운전면허시험장(상계동 807-1 일원) 이전

- 이전위치: 의정부시 장암동 223일원
- 이전면적: 60,500 $m^2$
- 도시계획: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 사업기간: '20.3월 ~ '25. 12월
- 이전사업비: 약 983억원(추정)

## 2) 행정구역 변경(수락리버시티1,2단지,'19.10월말 기준 )

- 대상지: 의정부시 장암동 412일원 약 13.5만 $m^2$ (기반시설 포함)
- 세대수: 1,153세대(1단지 680, 2단지 473), 인구수: 3,357명

※ 서울시, 경기도, 의정부시 및 노원구 T/F 구성 후 이후 관련 절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추진

## 3) 의정부시에 대한 상생협력 지원

- 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노원구와 공동이행)
-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 주차장 개발 지원

## ○ 그간 추진경과

- '19.10.31. 의정부 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원칙적으로 수용
  - 서울시 제안사항 외 주민 및 시의회 설득을 위한 추가 인센티브 필요
- '19.12.13. 행정1·2부시장 연석회의 - 의정부시 요청사항 검토
- '20. 2.14. 의정부시장 면담 (지역발전본부장)

- 면허시험장 이전 및 행정구역 변경 등 큰 틀에서 상생협력 필요
- '20. 3. 4. 행정2부시장 보고
- '20. 3. 6~10. 시의회 보고(의장, 상임위원장)
- '20. 3.10. 행정1부시장 및 시장 보고
- '20. 3.13. 동반성장 및 상생발전을 위한 기본 협약 체결(화상 협약)

## 나. 주요협약내용

### ○ 협약개요

- 협 약 자: 서울특별시, 의정부시장, 노원구청장
- 협약목적: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및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을 위해 상호 협력
- 협 약 일: '20. 3. 13(금) 15:00

- 협약대상: 도봉면허시험장 장암동 이전, 장암동 행정구역 변경 노원구 편입, 의정부시에 상생협력 지원

### ○ 상생협력 방향

-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편익 및 면허시험장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 고려한 큰 틀에서 상생협력 지원

### ○ 기관별 역할

[서울시] 본 협약의 상생협력(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노원구와 공동이행 및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 주차장 활용 지원

[의정부시]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역 인근 이전 관련 개발제한구역 해제

## 및 행정업무 지원

[노원구] 본 협약의 상생협력(호원복합체육시설 건립) 지원 서울시와 공동이행

○ **협약기간:**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 발생, 본 협약 해지 시까지 유효

단,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의결을 받은 때로부터 효력발생

## 4. 검토의견

○ 이 동의안은,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도봉면허시험장을 의정부시 장암동으로 이전하려는 사안에 대하여, 서울시와 의정부시, 노원구 간에 상호 협력하는 협약을 체결한 가운데('20.3.13.), 의정부시 지원을 위하여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는 관계로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sup>1)</sup>에 따라 서울시의 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도봉면허시험장은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포함되어 있고,

---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 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시의 처리사무 중 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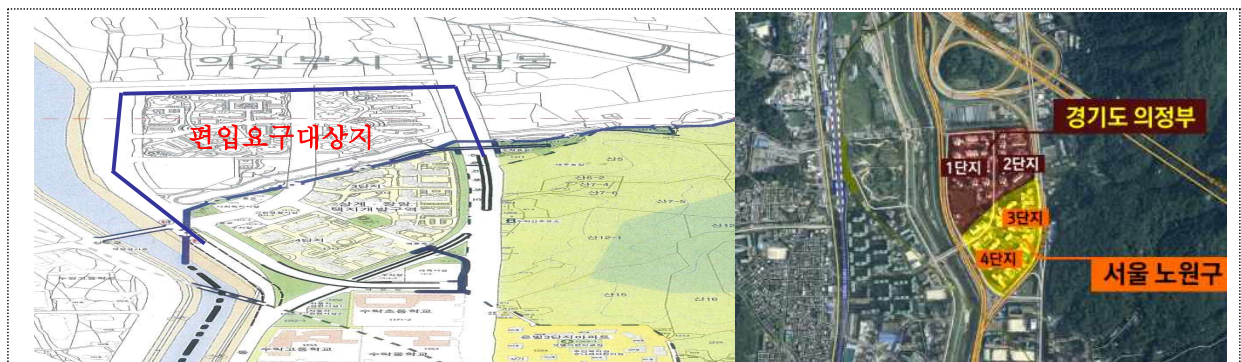
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연접한 창동차량기지<sup>2)</sup>와 함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그 동안 이전 대상지를 물색해 온 가운데, 마침내 의정부시 장암동 이전 협약이 합의되어 이를 위한 의정부시의 행정 업무(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와 서울시의 지원 사항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구분	도봉면허시험장 부지	이전 대상지
위치	노원구 상계동 807-1 일원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면적	67,420㎡(20,430평)	60,500㎡(18,340평)
토지소유현황	경찰청(73%), 서울시(18%), 노원구(9%)	사유지(81.9%), 국유지(17.5%), 사유지(0.6%)
도시계획	자연녹지지역(공공청사)	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지역
현황사진		

- 동일한 아파트 단지이나 행정구역이 달라서 학군 등의 민원과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의 행정구역 변경까지 포함하여 3개 지자체 간에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파악됨.



2) 창동차량기지(179,578㎡)는 남양주시 진접으로 2024년까지 이전 완료될 예정임

- 협약에 따른 서울시의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의정부시의 호원복합체 육시설 건립과, 서울시가 보유한 의정부시 장암역 환승주차장 부지 (5,855 $m^2$ )를 의정부시에 매각하는 사항으로<sup>3)</sup> 요약되며, 이 중 체육 시설 건립 지원에 서울시의 재정 부담이 수반되게 됨.
- 도봉면허시험장의 이전에 따라 창출되는 부가가치와 편익 등을 감안 할 때, 이를 가능케 합의해 준 의정부시에 서울시가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창동·상계 일대는 서울시 뿐 아니라 수도권 동북부 중심지로서 육성할 계획이고 도봉면허시험장·창동차량기지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 조성은 이를 위한 핵심 사업으로서, 관련 지자체 간의 공조는 수도권 동북부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사료됨.



〈창동상계 일대 신경제중심지 육성 계획안〉

3) 의정부시는 장암역 환승주차장(9,747 $m^2$ )에 주민편의시설 복합개발을 검토 중임

또한, 교통·환경·산업 등 행정구역을 넘어선 지역 간의 정책적·사업적 협력이 보다 크게 요구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지자체 간의 협약은 서로 상생하는 모델로서 앞으로도 독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협약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행정구역 편입 사안은<sup>4)</sup> 전문기관의 손익 분석, 유관기관 동의 등 관련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행정절차에 필요한 계획 수립과 실무 협의가 계속되어야 하고, 체육복합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서울시의 재정 부담은 관계 사안의 면밀한 검토 및 합리적 협의를 통해 그 재정 규모가 타당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초반에는 예측 불가능 사항들이 향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자체들 간에 긴밀하고 효율적인 공조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하겠음.

- 한편, 의회 동의 후 협약이 체결되어야 함에도 이 사안은 협약 체결 후 동의안이 제출되었는데,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필요한 상황에서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19.12.)<sup>5)</sup> 올 연말까

---

4) 편입 대상은 13.5만 $m^2$ (기반시설 포함)/1,153세대(3,357명)로서, 행정구역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음

※ 변경절차: 대상지 선정(시·도) → 기본계획 수립 → 시·구의회의 의견수렴 → 시·도의회의 의견수렴 → 시도지사 건의 → 검토 및 대통령령(안) 작성 → 입법 예고 및 법제처 심의 → 국무회의 상정 → 재가 및 공포 → 자치단체 등 통보

5)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기해제지역(주민 집단 거주 취락)과 연접한 지역으로서, 개정 전 지침으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가능하나, 개정 후에는 주민 집단 거주 취락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면허시험장 이전 대상지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지 입안되어야 하는 시급성에 기인하여 협약을 선행하되, 관련 조례에 따라<sup>6)</sup>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의 효력발생 시기 조건을 붙여 협약을 체결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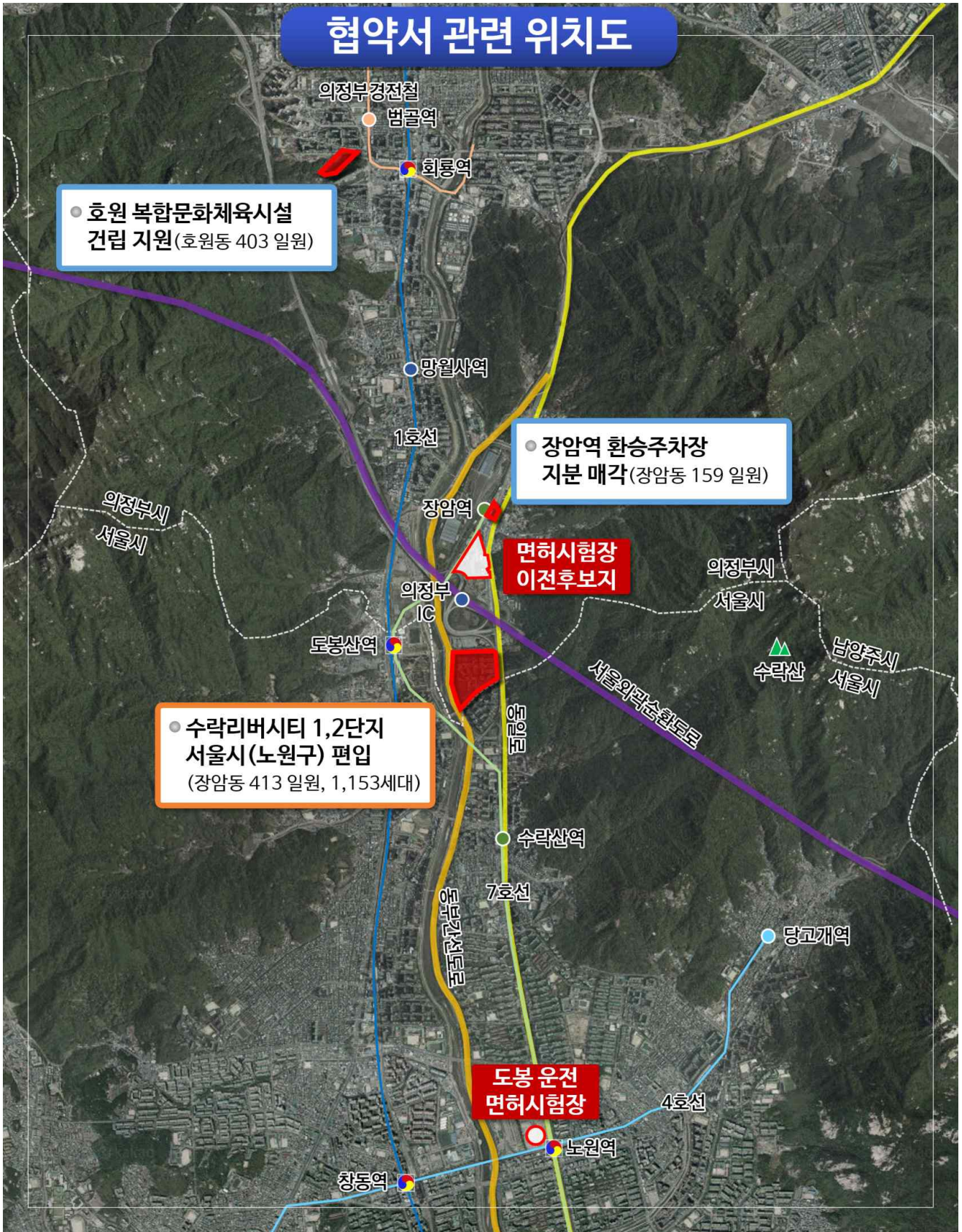
담 당 자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입법조사관 최 정 희
연 락 처	02-2180-8206
이 메 일	rienrien@seoul.go.kr

해제하기 위해서는 지침의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21년 전까지 입안되어야 함(붙임2)

6) 서울특별시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조례

**제4조(협약체결)** 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3 단서에 따라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붙임1〉 협약서 관련 위치도 (자료: 지역발전본부)



〈붙임2〉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p style="text-align: center;"><b>개 정 전</b> [시행 2018. 8. 10.]</p>	<p style="text-align: center;"><b>현 행</b> [시행 2019. 12. 31.]</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b></p> <p>3-2-1.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도시관리계획 입안일 기준으로는 향후 3년내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도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한다.</p> <p>(3)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②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이나 기존 시가지 등과 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p>	<p style="text-align: center;"><b>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b></p> <p>3-2-1. 개발수요 등을 감안할 때 광역도시계획에서 제시한 목표연도내 실질적 개발·활용이 가능한 지역 중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지 착공이 가능한 지역으로서 도시발전 및 지속가능한 개발의 측면에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선정한다.</p> <p>(3) 난개발 방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공급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2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0만제곱미터 미만의 규모로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p> <p>② 실내체육관, 사회복지시설, 공공청사 등 도시민의 여가·복지시설을 확충하거나 공익성이 높은 시설의 설치 등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이미 해제된 지역(영 제2조 제3항제2호, 제5호부터 제7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이나 기존 시가지(영 제2조제3항제2호, 제5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등과 연접하여 개발이 가능한 지역</p> <p>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3-2-1(3)의 개정규정은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p>
<p>※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의 기준)</p> <p>③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을 조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p> <p style="color: blue;"><b>2.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약으로서 주거환경 개선 및 취약 정비가 필요한 지역</b></p>	



### <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이전에정지 현황 >

- 위치 : 의정부시 장암동 223 일원
- 면적 : 60,500  $m^2$  (18,340평)
- 토지소유현황 : 사유지(81.9%), 국유지(17.5%)  
시유지(0.6%)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